정읍첨단 A-1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입주자격완화·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50만원] [모집공고일: 2022.03.24]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국민임대 신청 안내]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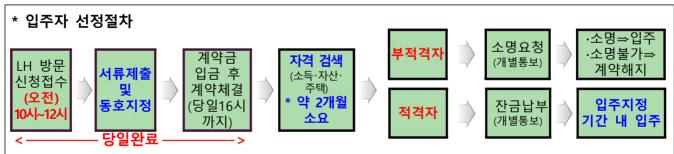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필요시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주요사항 요약

금회 모집은 미계약(재임대 주택 및 샘플하우스 포함) 된 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것으로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체결하며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가능합니다.

- ※ 아래 사항은 금회 모집에 관한 요약 내용이오니, 본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동호지정]: '22.04.14(목)~04.15(금) 오전10:00~12:00(12시이후도착자 접수불가)
 - * 계약체결: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미비시 신청불가하오니 신청자의 제출서류를 반드시 준비해 오셔야 동호지정 가능합니다.
 - *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합니다. (예시) 09:00 도착자. 09:59 도착자 모두 10시까지 대기 후 추첨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 신청장소: LH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당일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절차**(동호지정, 선계약 후검증)



• 자격 검색(약 2개월정도 소요) 완료 세대 추후 개별안내

[동호지정 순번 결정 방법]

10:00 이전 도착자	• 도작시간과 관계없이 농능한 순번으로 간수하여 주점을 통해 농호지성 순서를 결정하게 되며,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한 순으로 진행됩니다.
10:00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동호지정은 <u>모집기간 내 <mark>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mark>되며,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는 도착시간과 관계 없이 10시에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u>
- 동호지정 순번이 호명되면 해당 **순번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해당순번 호출시 **3회 이상 호명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지체없이 후순위 순번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지난 순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번호표를 새로 배부 받아 순번에 맞게 진행하여야 함)
- 한번 선택한 **동호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동호지정을 완료한 후 당일 오후4시까지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해야 하며, **방문계약만 가능**(온라인계약 불가)
- 22.04.11(월)~04.13(수)동안(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16:00(11:30~13:30 제외)내에(주말·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방문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인 경우에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됩니다.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 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계약) 준비사항 (미비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① 계약금 50만원(당일 안내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므로 계약금 이체가 가능한 상태에서 방문, 현금납부 불가) *계약체결시 입금영수증(또는 이체확인증) 제출
- ② 본인(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공통 제출서류,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제출 '5.신청서류' 확인

■ 입주자격 완화 주요 내용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자산중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3,557만원 이하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계약시 주택, 소득·자산, 자동차 소유관련 기준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4에 따른 정상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요건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며(6. 유의사항 참고),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첨단3로 7(신정동)일원 국민임대주택 378호 中 232호
- 2. 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신청접수기간(동호지정·계약) : '22.04.14(목) ~ 04.15(금)

*동호지정 : 당일 오전10시 ~ 12시(12시이후 도착자 접수불가)

*계약체결 : 동호지정 당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모집인원 충원 시, 사전 마감)

소요 절 차 장 소 상세 내용 기간 자세한 구비서류는 '5.신청서류' 참조 신청(계약) 서류 준비 각 서류별 발급처 ※ 서류미비시 계약불가 ① 동호지정 순번 결정
· (10시 전 도착자)
- 접수대장 작성 후 순번 추첨
· (10시 이후 도착자)
- 도착순서대로 순번표 배부
② 구비서류 제출, 청약신청서 등 작성 신청서작성/서류제출 ['22.04.14~15] 오전10시~12시 * 서류구비 후 방문 LH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22.04.14~15] Д Д LH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오전10시~12시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 하는 동호 지정 당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선착순 동호지정 Ţ 일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50만원 입금 (입금자:계약자명 기재) 무통장·은행·PC·모바일 이체 계약금 납부 (현장납부 불가) ※ 계약금 미납시 계약불가, 현금납부 불가 Д · **오전10시~오후4시**(12:00~13:00 제외) · 계약금입금사실 확인 및 서류완비시 계약가능 ※ 동호지정 당일만 계약체결 가능 LH전북지역본부 별관 2층 계약 체결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Д 약2개월 자격 검증 신청자의 입주자격 적격여부 확인 Ų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 소명 부적격자 소명 약 2주 ※ 소명 불가시 입주 불가능 Л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입주안내 예정 입 주 입주안내 후 입주지정기간은 1개월

-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시 접수마감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u>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u>하며, <u>부적격자</u> 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임대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u>입주</u>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u>추후 개별 통보</u>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22.04.11(월)~04.13(수)동안(관리소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단지 내 샘플하우스를 개방하오니, 계약 전 세대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내에(주말·공휴일 제외/ 신분증 지참) 방문 바랍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세대 당 계약면적(n								임대조건			— _Т		거하		최대전환시	
공급	ᄌᄀ	주거	그 밖의 공용면적	밖의 ·면적		건설 호수	금회 공급 호수	해	임대보증금(천원)					전환 가능 즈그	임대조건		
형별	주거 전용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호수	호수	당 동	계	계약금	잔금	(원)	조및난방	힌	보증금 한도액 (천원) 보증 (천원		월 임대료 (원)
29A	29.19	13.37	2.9072	9.356	54.8232	96	83	103	7,009		6,509	108,520	복도직	(+)	9,000	16,009	63,520
29B	29.19	13.37	2.9072	9.356	54.8232	20	18	103	1,009	500	·	100,520	· / 벽 식	(-)	4,000	3,009	116,850
39A	39.45	18.07	3.9292	12.6445	74.0932	202	100	101,	13,678		13,178	147,490	/	(+)	14,000	27,678	77,490
39A	39.43	10.07	3.9292	12.0443	74.0932	202	100	102	13,070		15,176	147,430	갧	(-)	9,000	4,678	166,240
46A	46.23	21.17	4.6045	14.8176	86.8270	60	32	102	19,062		18,562	169,830	道 난	(+)	13,000	32,062	104,830
40A	40.23	21.17	4.0043	14.01/0	00.0270	00	32	102	19,062		10,302	109,030	바	(-)	13,000	6,062	196,910
	공급호수 계 37				378	233				_							

- 금회 모집은 **미계약[재임대세대 및 샘플하우스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및 재임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에 따라 모집호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9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시 이율 2.5%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장기공공임대주택입니다.

4.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2.03.2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 충족 및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	냥권등 *을 소유하고 있	지 아니할 것					
무주택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으 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		선정사와 주민등록 상 하 '분리배우자') 포함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				
	• 신청자의 직	··_ 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	게이득의 배우지 우자의 직계비속 2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		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힘					
세대 구성원	외국인 배우자	국내거소신고)을 한 시 * 신청자와 동일 주 : 자격검증대상에 포	ㅏ람 쇼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				
	외국인 직계존·비속	국내거소신고)을 한 시 신청자 또는 분리배 ⁴ 표등본에 기재되어 있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처	h람으로서, 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	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니	나 자격검증 예외					
	비배우자와 등 에비신혼부부자가 계약자: 1세대 1주택에는 입주 전	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 통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의 경우 당사자 2인중 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	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 [:]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변경이 불가합니다.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	나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원을 포함 성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 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 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				

- ※ <u>단</u>,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 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u>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m'이하</u>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m²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①, ②, ③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 및 국민임대주택 임주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m²이상 신청 불기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중증장애인 확인서 상 중증장애인 표기가 되어야 함).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 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기준자격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가구원수		기본자격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90% 이하)	참고사항				
		1인가구	90%	2,890,902원 이하					
		2인가구	80%	3,875,496원 이하					
	소득	3인가구		4,492,996원 이하	* 기그이스트 베레그셔이 뭐이야 마취				
		4인가구	70%	5,040,566원 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5인가구		5,128,250원 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6인가구		5,445,878원 이하					
		7인가구		5,763,505원 이하					
		8인가구		6,081,132원 이하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자산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557만원이하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완화자격

소득기준	· 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	∘ 자산요건 배제, 자산중 자동차 가액 기준액은 3,557만원 이하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기표준액 적용) 토지기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기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총 자 산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기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시 자산 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5. 신청서류-모집공고일(2022.03.24.) 이후 발급분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서류는 **모집공고일('22.03.24)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계약 관련 필수 서류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 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 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암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1)	(동의방법) 나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공사양식 신청자작성	1통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확약서	선계약후검증 입주관련 확약서	공사양식	각 1통
(별첨2, 별첨3)	입주자격 완화 관련 확약서	신청자작성	7 10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세로 발급)	• <u>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u>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 <u>록 발급</u> 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 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 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상세로 발급)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센터	1통

■ 신청자격 보완서류 (해당자만 제출)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센터	1통
혼인관계서류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 서(별첨6, 별첨7),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주민센터 ・공사양식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주거약자용), 미성년자녀수, 단독세대 예외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주민센터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불가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m²초과 50m²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관할지사	1통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1통

6.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입주 자격 완화 내용 ① 소득요건 배제		
자격완화 사항	② 자산요건 배제, 자산 중 자동차가액은 3,557만원 이하 일 것		
~10	•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20.10.23) 내용을 반영하여 자격요건 완화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을 1회 허용하며,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 6%(임대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시에는 2.5%)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 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 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	•	40% 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갱신시 1회 퇴거유예 확인서와 전용 40㎡이하 예비입주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만약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하며, 소득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완화 전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격 참조)
- 이 주택은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 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u>1세대(세대구성원 전원)</u>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 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계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완료 및 입주 안내 통보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 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계약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계약한사람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 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계약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 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기타사항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u>http://apply.lh.or.kr)에서</u>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 중에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본 단지는 '21.02.19~'21.03.20. 최초 입주하였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신설은 교육청 일정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설립계 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 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정읍첨단A1-1BL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418-82-06818)	㈜코원건설	-	㈜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 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3. (분양권등의 상속 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 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휠체어 사용자
712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_ ⊤ ≒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휠체어 사용자
42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시각 장애인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지역 중에진

-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 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욕실	좌식 샤워시설 역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1개소에 한함)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3843848 8415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T6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거실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u>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u>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0.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 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 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 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 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 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 (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근로 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I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 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총자산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입목재산		 - 지방세정 자료	
	자산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_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팸플릿 배부처 LH 전북지역본부 6층 주거복지사업1부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마이홈센터 063)230-6162, 상담콜센터 063)230-6471,6472,6473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임대문의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LH세븐 효자휴먼시아 팰리스 5단지 동호지정 전북지역본부 LH 전북지역본부 및 ● 새마을금고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계약체결 교통편: 61번 버스 효자5,6단지 앞 하차 장 효자휴먼시아 효자휴먼시아 3단지 6단지 동암고 우림초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3.24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